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319 |
|----------|------|

2016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라. 상정결과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답변)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9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

가. 제안이유

-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운영자문단,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제10조)
- (2)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출연금, 수익사업,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 제18조)
- (3) 검사·보고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조~ 제20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 (3)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 (4) 기타
 - 1) 입법예고 (2016. 7. 14. ~ 8. 3.) 결과 : 붙임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1) 조례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120서비스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21개 조에 걸쳐 목적, 적용범위, 설립, 재단의 사업, 정관, 이사회, 기금, 출연금,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 | 조제목 | 조 | 조제목 |
|------|----------|------|------------------|
| 제1조 | 목적 | 제12조 | 기금 |
| 제2조 | 적용범위 | 제13조 | 출연 |
| 제3조 | 설립 | 제14조 | 운영재원 등 |
| 제4조 | 재단의 사업 | 제15조 | 사업연도 |
| 제5조 | 정관 | 제16조 |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 제6조 | 임원 | 제17조 | 수익사업 |
| 제7조 | 임원의 직무 | 제18조 |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 제8조 | 이사회 | 제19조 | 검사·보고 |
| 제9조 | 운영자문단 | 제20조 | 공무원의 파견 |
| 제10조 | 직원 | 제21조 | 규칙 |
| 제11조 | 기본재산의 조성 | 부칙 | |

-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의 체계와 규정들이 거의 유사한 편인데 본 조례안 역시 타 재단의 조례를 대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에 대한 법체계와 규정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제명의 변경, 일부 자구의 수정 및 조문의 이동 등 일부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두고 있음.
- 동 조례안의 경우,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설립) 등 3개 조가 총칙규정이고 제4조(재단의 사업), 제5조(정관),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직무) 등 나머지 18개 조가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안 제4조(재단의 사업)부터 제10조(직원)까지 재단 운영 관련 규정이며, 안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부터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등은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출연금, 수익사업,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 조례 제명

- 조례안 제출(16.8.12) 이후에 120서비스재단(가칭)의 명칭을 공모하여 재단명이 결정(16.8.26)됨에 따라 최종 선정된 ‘120다산콜 재단’으로 조례명,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적용범위 중 명칭이 수정되어야 함.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서울특별시 <u>120서비스재단</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u>120다산콜재단</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제1조(목적)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 | 제1조(목적)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 |

| | |
|---|---|
| <p>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u>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u>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적용범위)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2조(적용범위)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총칙규정

- 동 조례안의 총칙규정은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설립) 등을 규정한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목적 또는 취지를 규정한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며

동 조례안에서는 단순생활정보 등 행정과 무관한 분야는 재단의 기능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 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목적규정 입안에서 “이 조례는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p>제1조(목적) <u>시민중심</u>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u>,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시민중심</u>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u>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안 제3조(설립)에 따르면 120다산콜재단의 법적 성격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르도록 함.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조로 구성되어 있음. 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본칙규정

- 동 조례안의 본칙규정은 제4조(재단의 사업)에서 제21조(규칙)까지 재단의 사업 및 정관에 관한 규정과, 조직 및 인력의 구성에 관한 규정, 예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 사무의 위탁과 검사·보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의 사업 및 정관에 관한 규정

- 안 제4조(재단의 사업)에서 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각 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 중 제9호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하기관 콜센터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기존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어 재단이 관여할 필요가 적어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재되어있는 콜센터 기능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와 특수성이 반영되어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보다 효율적일지는 의문임.

<안 제4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8. (생략)</p> <p><u>9.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u></p> <p>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8. (제정안과 같음)</p> <p><u>9. 삭제</u></p> <p>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

또한 이러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가 업무의 효율화보다 향후 콜량 감소에 따른 상담원 정원 감축 환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

산하기관 통합 대상기관과 대표번호 통합 대상기관으로 구별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재단의 불필요한 사업업무 확장이 아닌지 우려됨.

<산하기관 통합 대상기관 현황>

| 연번 | 대표번호 통합 대상기관(12개소) | |
|----|--------------------|-----------|
| | 기관명 | 대표번호 |
| 1 | 농수산물공사 | 3435-1000 |
| 2 | 서울연구원 | 2149-1000 |
| 3 | 서울산업진흥원 | 1577-7119 |
| 4 | 서울여성가족재단 | 810-5000 |
| 5 | 서울시립교향악단 | 1588-1210 |
| 6 | 디자인재단 | 2096-0000 |
| 7 | 장학재단 | 715-2257 |
| 8 | 서울시복지재단 | 2011-0400 |
| 9 | 자원봉사센터 | 1670-1365 |
| 10 | 서울문화재단 | 3290-7000 |
| 11 | 평생교육진흥원 | 대표번호없음 |
| 12 | 서울관광마케팅(주) | 3788-0800 |

| 연번 | 콜센터 통합 대상기관(7개소) | |
|----|------------------|-----------|
| | 기관명 | 대표번호 |
| 1 | 서울메트로 | 1577-1234 |
| 2 | 도시철도공사 | 1577-5678 |
| 3 | 시설관리공단 | 1588-4388 |
| 4 | SH공사 | 1600-3456 |
| 5 | 서울의료원 | 2276-7000 |
| 6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 7 | 세종문화회관('15.9~) | 399-1000 |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콜센터 현황

(‘16.8월 현재)

| 연번 | 콜센터명 | 대표번호 | 운영시간 | 직원 수 (관리자 포함) | 관리현황 | 평균임금 | 2016 예산 | 2016 콜량 (일평균) | 비고 |
|----|------------------|-----------|---|------------------|-------------------|---------------------------|-------------------|------------------|------|
| 1 | 서울메트로 | 1577-1234 | 365일 24시간 | 23명 (관리자2) | 민간위탁 | 230만원 | 620백만원 | 3,000건 | KTCS |
| 2 | 도시철도공사 | 1577-5678 | 평일 : 05:10 ~ 익일 01:40 토·일·공휴 일 : 05:10 ~ 익일 00:40 | 18명 (관리자3) | 직영 (정규직, 순환보직) | 495만원 (도철 정규직 평균임금) | 830만원 (인건비 별도) | 845건 | - |
| 3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 1588-4388 | 365일 24시간 | 41명 (관리자3) | 직영 (정규직) | 217만원 | 1,695백만원 | 3,961건 | - |
| 4 | SH공사 시프트콜센터 | 1600-3456 | 평일 9:00~18:00 | 55명 (관리자9) | 민간위탁 | 208만원 | 1,881백만원 | 2,010건 | MPC |
| 5 | 서울의료원 | 2276-7000 | 365일 24시간 | 10명 (관리자 2) | 민간위탁 | 269만원 | 300백만원 | 150건 | KTCS |
| 6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평일 9:00~18:30 | 29명 (관리자5) | 민간위탁 | 230만원 | 893백만원 | 1,300건 | MPC |
| 7 | 세종문화회관 | 399-1114 | 365일 9:00~20:00 | 2명 | 민간위탁 | 207만원 | 53백만원 | 54건 |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ARS(1577-7119)로 부서연결 시스템임

- 안 제5조(정관)에서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관에서 목적, 명칭, 그 밖에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1)에서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따른 것임. 다만 법인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 처분,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음.²⁾

이는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운영 독립성·자주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안 제5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 1)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직 및 인력의 구성에 관한 규정

- 안 제6조(임원)와 제7조(임원의 직무)에서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기관별 형태의 특성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³⁾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문제점이 없음.
- 안 제8조(이사회), 제9조(운영자문단) 및 제10조(직원)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⁴⁾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민주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예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과 기금 및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임.

안 제16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규정) 중 제2항은 조제목과 항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제출관련 조항이 아닌 제19조(검사·보고)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3)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4)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16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 ③ (생략)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

- 안 제17조(수익사업)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향후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거조항이 되게 하는 것으로 재단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출된 ‘120서비스재단(가칭)설립 추진계획(안)’(붙임4 참조)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상담DB분석을 통한 시정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대행이나 타 기관 콜센터 운영방안 및 효율화 연구용역을 수탁하고자 하나, 이는 추상적인 것으로 향후 재단설립 후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경우 이후에 논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임.

▷ 사무의 위탁과 검사·보고에 관한 규정

- 안 제18조에서는 서울시가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수탁사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과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19조의 (검사·보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⁵⁾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제20조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⁶⁾를 따르고 있어 법리적으로 해석의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9조의 ②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①항을 표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료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안 제19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19조(검사·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자료 하여금</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검사·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사람에게</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u><신설></u> |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 |

- 5)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6)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수정의견 종합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서울특별시 <u>120서비스재단</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u>120다산콜재단</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제1조(목적) <u>시민중심</u> 맞춤형 행정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u> ,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시민중심</u>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u>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u> ----- ----- ----- ----- -----. | 제2조(적용범위)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u> ----- ----- ----- ----- -----.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8. (생략) <u>9.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u> 10. (생략)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8. (제정안과 같음) <u>9. 삭제</u> 9. (제정안과 같음) |
|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다</u> . |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u> |

| | |
|---|--|
|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 ③ (생략)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
| 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생략) |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정안과 같음) |
| 제19조(검사·보고) <u>시장은</u>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자료 하여금</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검사·보고) ① <u>시장은</u>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사람에게</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신설> |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 |
|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생략)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정안과 같음) |
| 제21조(규칙) (생략) | 제20조(규칙) (제정안과 같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최종 결정된 재단명으로 조례제명과 조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며, 정관 기재사항 변경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익사업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319 |
|----------|---------|

제안연월일 : 2016년 9월 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최종 결정된 재단명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조례제명과 조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수익사업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조제목과 항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이동하도록 함.

2. 주요골자

- “120서비스재단”에서 “120다산콜재단”으로 제명 및 개별 조문을 수정함(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 재단의 사업 중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를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4조).

-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 수익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며,

안 제1조 “시민중심”을 “이 조례는 시민중심”으로 하고,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를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로 하며,

안 제2조에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로 하고,

안 제4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또한 같다.”를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는 제17조로 하고,

안 제19조는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시장은”은 “①시장은”으로 하고
 “자로 하여금”은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는 각각 제19조와 제2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정안 | 수정안 |
|--|--|
| 서울특별시 <u>120서비스재단</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u>120다산콜재단</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제1조(목적) <u>시민중심</u> 맞춤형 행정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u> 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시민중심</u>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u> 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u>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u> ----- ----- ----- ----- -----. | 제2조(적용범위) <u>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u> ----- ----- ----- ----- -----. |

| | |
|--|--|
|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8. (생략)</p> <p>9.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u></p> <p>10. (생략)</p> |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8. (제정안과 같음)</p> <p>9. <u>삭제</u></p> <p>9. (제정안과 같음)</p> |
| <p>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다.</u></p> | <p>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u></p> |
| <p>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p> <p>① (생략)</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 <p>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삭제</u>)</p> <p>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p> |
| <p>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p> | <p><삭제></p> |
| <p>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생략)</p> | <p>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정안과 같음)</p> |
| <p>제19조(검사·보고) <u>시장은</u>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자료 하여금</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p> | <p>제18조(검사·보고) ① <u>시장은</u>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사람에게</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p> |

| | |
|---------------------------|---|
|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 <신설> |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 |
| <u>제20조(공무원의 파견)</u> (생략) | <u>제19조(공무원의 파견)</u> (제정안과 같음) |
| <u>제21조(규칙)</u> (생략) | <u>제20조(규칙)</u> (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

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자문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수탁사업수익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

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검사·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